

증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

[2019. 4. 5
조례 제858호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증평군의회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평군의회 업무추진비의 집행 및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회계관계공무원”이란 증평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서 근무하는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집행 및 공개 등의 대상이 되는 업무추진비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.

1. 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
2. 의회운영업무추진비

제4조(업무추진비 집행 기준) 증평군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야 한다.

1.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64조에 따른 규칙이나 지침을 준수할 것
2.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할 것
3. 사용목적에 맞게 적정한 금액을 집행할 것

제5조(업무추진비 사용제한)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다

1.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른 기부행위에 위배되거나,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 등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에 위배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2. 심야시간(23시 이후), 휴일,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. 다만,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3. 친목회, 동호회 및 시민단체 등의 회비 등 명목을 불문하고 사적 모임을 위한 비

용이나 경비

4.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때에 지급하는 격려금
5.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
6.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간 식사비
7. 그 밖의 의원의 직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
제6조(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) ① 증평군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매월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의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건별로 구분하여 공개하며, 공개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용일시
2. 사용목적
3. 대상 인원 수
4. 사용 금액
5. 결제방법(신용카드, 현금 등)
6. 그 밖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7조(정보공개)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법령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정보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제8조(교육) 의장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.

제9조(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점검 등)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
1. 제3조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
2. 제4조의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에 위배되는지 여부
3. 업무추진비 집행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
4.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공개 및 공개 거부의 적정 여부
5. 그 밖에 의장이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 관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) 의장은 점검 결과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환수,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